

■ 뉴질랜드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바로가기 ⇒ <http://www.privacy.org.nz>

메일보내기 ⇒ enquiries@privacy.org.nz



뉴질랜드는 인구 391만명의 섬나라로,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구도 영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임명되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지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왕권에 의해 직접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구로서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91년 제정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법(The Privacy Commissioner Act 1991)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또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예산 등 1989년 공공재정에관한법률(The Public Finance Act 1989)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활동을 위한 예산은 동법에 따라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Bruce Slane으로 변호사이자 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1992년 초대 커미셔너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 관장법률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주로 뉴질랜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1993 프라이버시법을 관장하고 있다. 동법은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설립과 정보대조를 위한 법률요건을 규정한 1991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법(The Privacy Commissioner Act 1991)에 이어 제정된 것으로 1993년 7월 시행되었다. 동법의 주된 목적은 「1980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 부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지켜야할 12가지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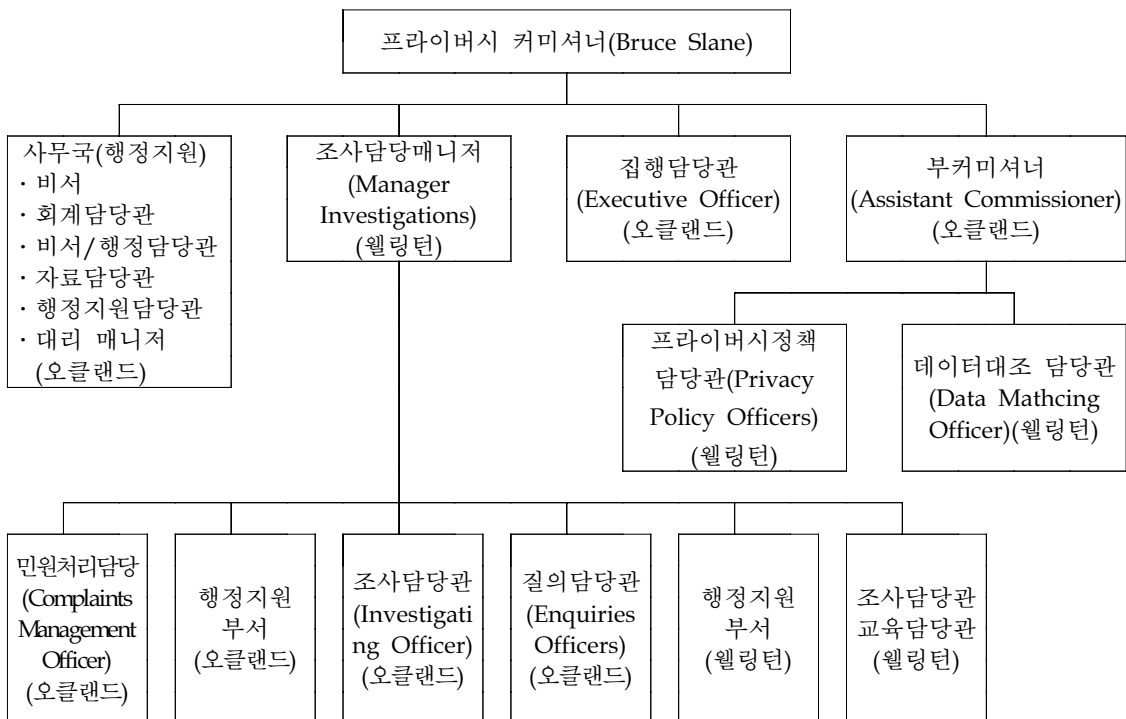
3. 업무범위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93년 프라이버시법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바, 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관할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독한다. 다만, 1993년 7월 1일 이전에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행사 및 동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에관한법률(The Official Information Act) 또는 지방정부의공공정보및접근에관한법률(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 Act)에 따라 옴브즈만이 담당한다.

4. 조직구성

뉴질랜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1인과 부커미셔너 1인, 조사·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2002년 6월말 기준, 비정규직을 포함한 2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의 채용은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독자적으로 행한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조직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조직도>



5. 주요기능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1993년 프라이버시법과 정보프라이버시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① 화해 또는 조정을 통한 개인정보피해구제, ② 민원접수 및 자체조사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여부 실태조사 또는 법규준수여부 감독, ③ 각종 프라이버시 행동규약 제정, ④ 각종 질의접수·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⑤ 정부와 공공기관 및 의회에 대한 입법안 검토 및 정책자문, ⑥ 프라이버시 관련 조사 및 연구, ⑦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⑧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주요기능과 업무>

| 주요기능 | 세부내용 |
|-----------|--|
| 피해구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접수 및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 당사자 의견청취, 회의 소집, 화해·조정 등을 통한 분쟁해결 · 분쟁사건에 대한 의견제시 · 인권소송담당관(The Director of Human Rights Proceedings)에 미해결 민원사건 이관하여 인권심의법원(The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으로 소제기 검토 및 결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접근권 행사 지원 및 보호 |
| 조사·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침해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법규 준수여부 감독 · 정부의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인가 및 규제 · 법규위반 확인시 검찰 등 해당기관 이첩 |
| 프라이버시 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규약(Code of practice)의 제정 및 고시 · 특정영역에 대해서 정보프라이버시원칙의 내용을 수정하는 프라이버시 규약 제정하여 적용 |
| 정보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사업자, 정부에 대하여 각각 정보제공 · 상담팀 운영하여 서면 및 전화질의 접수, 처리 · 각 영역별 지침 제공 |
| 정책 및 입법자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 심의 및 의견제시 ·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의견제시 및 자문 |
| 개인정보보호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발전상황 조사 및 연구 |
| 교육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 언론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활동 등 홍보 |
| 유관기관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 국제협력 |